

2019년도 제1회 주택건축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서

2019. 6. 20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석전문위원

I.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율(%)
총 계	2,676,888	2,656,123	20,765	0.8
일반회계	297,525	308,363	△10,838	△3.5
보조금	264,698	275,536	△10,838	△3.9
특별회계	2,379,363	2,347,760	31,603	1.3
보조금	529,452	521,892	7,560	1.4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115,441	1,091,398	24,043	2.2

2.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율(%)
총 계	2,857,276	2,663,764	193,512	7.3%
사업비	1,967,909	1,953,245	14,664	0.8%
재무활동	887,590	707,627	179,963	25.4%
행정운영경비	591	591	0	0.0%
예비비	1,185	2,301	△1,116	△48.5%
일반회계	872,501	707,029	165,472	23.4%
사업비	406,829	421,320	△14,491	△3.4%
재무활동	465,081	285,118	179,963	63.1%
행정운영경비	591	591	0	0.0%
주택사업특별회계	1,984,775	1,956,735	28,039	1.4%
사업비	1,561,081	1,531,925	29,156	1.9%
재무활동	422,509	422,509	0	0.0%
예비비	1,185	2,301	△1,116	△48.5%

Ⅱ.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항별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	사 항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일반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387,935	404,046	△16,110	△4.0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지원	2,780	1,500	1,280	85.3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분석 및 정책방안 마련	90	-	90	순증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	249	-	249	순증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5,850	4,500	1,350	30.0	
	주택사업특별회계 일반전출금	(국민계정)	73,000	-	73,000	순증
		(도정계정)	98,500	-	98,500	순증
	주택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 (도시지역분 10%)	(도정계정)	143,866	140,309	3,557	2.5
(재촉계정)		143,866	140,309	3,557	2.5	
특별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193,797	176,187	17,610	10.0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	12,785	11,076	1,708	15.4	
	공공주택 건설지원 (추가8만호)	1,607	-	1,607	순증	
	석관제2구역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3,230	-	3,230	순증	
	재정비촉진사업 융자금 지원	8,000	3,000	5,000	166.7	
	예비비	(국민계정)	320	535	△215	△40.1
		(도정계정)	238	735	△498	△67.7
(재촉계정)		628	1,031	△404	△39.1	

Ⅲ. 검토의견

1. 총괄

- 2019년 제1회 주택건축본부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신규사업 편성, 국비 추가배정 및 감액에 따른 시비편성, '18년 세입결산 결과 등에 따른 세입 조치와 기금 및 특별회계로의 전입출 등 재무활동을 통하여 재정운영의 안정을 기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됨.

- 주택사업특별회계1)의 경우, 국고보조금의 세입초과분(75억 6천만원)이 발생하고, 순세계잉여금 부족분(△1,721억원)과 이를 감안한 기타회계 전입금(1,786억원), 예탁금회수수입(175억원)을 세입예산으로 반영하여 총 316억 3백만원이 증액됨.

〈'18회계연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계정	세입 결산액	세출 결산액	잉여금 (A)	다음연도 이월액(B)	국고보조금 집행잔액(C)	순세계잉여금 (D=A-B-C)	예산액	부족액
국민	590,388	581,949	8,439	0	3,017	5,422	65,271	△59,849
도정	1,043,085	979,672	63,413	14,256	0	49,157	144,918	△95,761
재촉	189,951	189,907	44	0	0	44	16,504	△16,460
총계						54,623	226,693	△172,070

2. 세입 관련

- '19년 주택건축본부 소관 추정 세입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합쳐 기정예산보다 207억 6천 5백만원(0.8%) 증액된 2조 6,768억 8천 8백만원임.
 - 일반회계에서는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신청자 수 감소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액분과,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 성능보강 공사비 지원을 위한 국비편성액이 추가 교부 예산에 있어 이를 세입 조치하여 108억 3천8백만원(3.5%)을 감추경하였고,
 -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는 다가구 주택매입임대를 위한 국고보조금 증액, 순세계 잉여금 결산결과 반영분, 일반회계 전입금(국민·도정계정) 및 재산세 도시지역분 증수분인 법정 전입금(도정·재촉계정),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증액(재촉계정)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316억 3백만원(1.3%)을 증추경하였음.

1) 주택사업특별회계 주관부서는 주택건축본부로서, 세입총괄은 주택정책과가 담당하며, 세출의 경우 국민·도정·재촉계정별로 각각 주택정책과·주거정비과·주거사업과에서 소관 및 운용하고 있음.

〈세입 추경예산안〉

(단위 : 백만원)

회계	사 항 별	증감사유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일반	국고보조금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신청자 수 감소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액	264,501	275,486	△10,984	△4.0
	국고보조금	화재취약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 지원 국고보조금 편성(11개소)	147	-	147	순증
특별	기금	다구 주택매입임대 국고보조금 증액 (150가구)	83,160	75,600	7,560	10.0
	순세계잉여금	(국민) 순세계잉여금 결산결과 반영	5,422	65,271	△59,849	△91.7
		(도정) 순세계잉여금 결산결과 반영	49,157	144,918	△95,761	△66.1
		(재축) 순세계잉여금 결산결과 반영	44	16,504	△16,460	△99.7
	기타회계전입금	(국민) 일반회계 전입금	73,000	-	73,000	순증
		(도정) 일반회계 전입금	98,500	-	98,500	순증
		(도정) 재산세 도시지역분 증수분	143,866	140,309	3,557	2.5
		(재축) 재산세 도시지역분 증수분	143,866	140,309	3,557	2.5
	예탁금회수수입	(재축)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증액	40,500	23,000	17,500	76.1

3. 세출 관련

- 주택건축본부 소관 '19년 추경 세출예산규모는 총 2조 8,572억 7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2조 6,637억 6천4백만원)보다 1,935억 1천2백만원 증액(7.3%)되었음.
- 일반회계는 주거급여수급자 신청자 수 감소에 따른 감액분(△161억 1천만원),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자 증가에 따른 증액분,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및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 증진을 위한 신규 사업비를 반영하고(16억 1천 9백만원),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일반·법정 전출금(1,799억 6천 3백만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23.4%에 해당하는 1,654억 7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추경예산안(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 항	추경사유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신청자 수 감소에 따른 예산 감액	(×264,501) 387,935	(×275,486) 404,046	(×△10,984) △16,110	△4.0
노후고시원 소방안전시설 설치지원	신청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 (당초 75→139호, 64개소 증가)	2,780	1,500	1,280	85.3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분석 및 정책방안 마련	기술용역비 신규 편성	90	-	90	순증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	화재취약건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 지원 신규 편성(11개소) ※ 국토부 시범사업 연계('19.3 공고)	(×146,700) 249	(×-) -	(×146,700) 249	순증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주택바우처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전출금 증액(주택 → 고시원 거주자 추가)	5,850	4,500	1,350	30.0
주택사업특별회계 일반전출금	(국민) 특별회계 세입 부족에 따른 전출금 증액	73,000	-	73,000	순증
	(도정) 증액	98,500	-	98,500	순증
주택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	(도정) 재산세 도시지역분 증수분 증액에 따른 법정전출금(10%) 편성	143,866	140,309	3,557	2.5
	(재촉) 다른 법정전출금(10%) 편성	143,866	140,309	3,557	2.5

-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확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및 준공공 임대·역세권청년주택 건설자금 이차보전 신청건수 증가, 공공주택 추가 8만호 조속 추진을 위한 건설지원, 재정비축진사업 용자금지원 신청 증가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6%에 해당하는 280억 3천9백만원을 증추경하였음.

〈세출 추경예산안(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사 항 별	추경사유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150호 추가 매입을 위한 예산 증액 (당초 1,500 → 1,650호)	(×83,160) 193,797	(×75,600) 176,187	(×7,560) 17,610	10.0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준공공, 역세권청년주택 건설자금 및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청 증가	12,785	11,076	1,708	15.4
공공주택 건설지원 (추가8만호)	추가 8만호 공급계획에 따른 사업성 분석 등 사전절차 용역비	1,607	-	1,607	순증
석관제2구역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준공('19.3)에 따른 보조금 지원	3,230	-	3,230	순증
재정비축진사업 용자금 지원	신청구역 및 신청금액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	8,000	3,000	5,000	166.7
예비비	(국민)	320	535	△215	△40.1
	(도정)	238	735	△498	△67.7
	(재촉)	628	1,031	△404	△39.1

▶ 일반회계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사업의 경우, ‘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²⁾와 지원대상 소득기준의 상향 조정³⁾ 및 임차급여 지급 기준임대료의 인상⁴⁾에 따라, 서울시 주거급여 지원가구⁵⁾가 약 25만 가구 증가⁶⁾할 것으로 예상하여 전년대비 47% 증액한 4천40억 4천6백만원(시비 1,285억 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신청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액 109억 8천 4백만원을 감추경하고, 이와 연계하여 세출예산도 161억 1천만원 감추경하였음.

- 본예산 편성 시 과다추정이 발생한 사유로는 정부가 지방정부 영향에 대하여 주도적·낙관적으로 추이분석 후 집행금액을 공지해 온 것에 대해 별다른 검증없이 수용·반영한 결과라고 보여지며, 향후 주거복지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적극적이고 책임성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하겠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증감사유)
자치단체 경상 보 조 금	(×264,501) 387,935	(×275,486) 404,046	(×△10,984) △16,110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8.10) 후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에 반해 실제 신청자수 감소

2) 실제 부양 사실이 아닌 잠재적 부양가능성(부양능력)을 따지는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로 부양능력이 있어도 부양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지원위한 조치임.

※ 부양의무자 : 수급자의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3) 기준 중위소득 43% → 44% 이하로 변경

4) 가구당 평균 9% 인상분을 반영함

(단위 :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2019	233,000	267,000	316,000	365,000	377,000	441,000	485,000	533,000
2018	213,000	245,000	290,000	335,000	346,000	403,000	443,300	487,630

5) 서울시 지원현황('18. 6월 현재) : 160,963가구, 228,949명

6) 전국적으로 증가 예상가구는 464,000가구로 이 중 서울시는 16.5%를 적용하여 산출함.

※ '18. 6월 현재 전국 지원가구(942,361가구) 중 서울시가 17%(160,963가구) 차지

<2019년 지원 가구 수 상승 추이>

기준연월	가구수 (가구)	수급자수 (명)	비고
2018년 1월	152,232	221,129	
2018년 2월	152,914	221,784	
2018년 3월	153,480	222,099	
2018년 4월	154,090	222,554	
2018년 5월	154,558	222,862	
2018년 6월	155,023	223,009	
2018년 7월	155,605	223,132	
2018년 8월	156,198	223,499	
2018년 9월	156,916	224,116	
2018년10월	164,217	234,914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18년11월	171,440	245,971	
2018년12월	175,692	252,349	
2019년 1월	178,764	256,466	소득기준 상승(43%→44%)
2019년 2월	181,403	260,068	
2019년 3월	183,739	262,947	
2019년 4월	187,179	267,661	

-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지원’⁷⁾에 기정예산(15억원) 대비 85.3%에 해당하는 12억 8천만원을 증추경 하였음. 이는 ‘19년 지원신청 접수결과, 예상보다 64건이 초과 신청되어 이에 대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증감사유)
민 간 위 탁 사 업 비	2,780	1,500	1,280	◦ 신청 증가에 따른 예산증액 (당초 75호→ 139호,64개소 증가)

- 이는 추가 신청분을 지원함으로써 노후고시원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추경 편성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사업성격이 소방재난본부에서 추진 중인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⁸⁾과 중복되어 고시원

7) 이 사업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2009.7.8.)되기 이전부터 영업 중이었던 노후 고시원 중 간이스프링쿨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고시원을 대상으로 5년간 고시원의 임대료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간이스프링쿨러 등 화재 안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8) ‘19년 제1회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 개발’ 사업에 따라 노후 고시원 등 숙박형 다중 이용업소에 간이스프링쿨러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택건축본부 사업과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 ▶ 소방재난본부 : 국비:시비:민간(1:1:1) 매칭 지원, ‘20년까지 전면 시행
- ▶ 주택건축본부 : 3년간 임대료 동결 조건으로 전액 시비지원

소유주 등 민간에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바, 향후 시(市) 차원에서 통일되고 일관된 사업추진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분석 및 정책방안 마련’은 동작구 상도동 흙막이 붕괴사고(‘18.9), 금천구 가산동 흙막이 붕괴사고(‘18.8) 등 최근 민간건축공사장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공사장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기술용역비 9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⁹⁾.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증감사유)
시 설 비	90	-	90	◦ 실태분석 및 정책방안 마련 기술용역비 편성

- 이는 주민생활을 위협하는 공사장 안전사고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예산편성의 시급성이 인정되나, 동작구·금천구 사고발생 시기를 고려할 때 금번 추경이 아닌 2019년 본 예산에 반영했어야 할 예산이라고 사료됨. 향후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예산편성으로 시민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겠음.

-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은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 예산 이후 시달된 정부의 시범사업 공고(2019.3.4.)에 따라 선정된 시민 신청분 11건에 대한 국비 매칭을 위해 신규 편성하게 된 것임. 건축물 관리법이 제정(‘19.4.30 공포)되어 ’20년부터 피난약자이용시설 등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됨에 따라 향후 이 사업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사업대상 :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다중이용업(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시설을 대상으로 화재취약요인¹⁰⁾을 갖춘 건축물

▶ 지원내용 : 신청 건축물을 대상으로 옥외피난계단, 간이스프링클러, 방화문, 하향식 피난

9) 기술용역심의(2019.4.11.) 결과 : 조건부 (설계용역 시행과정에서 담당공무원 및 용역 참여 기술자간 합동회의를 주기적으로 추진할 것

구 설치 등 건축물 소유자가 보강방법을 선택하되 건당 총 사업비 4천만원
(시비 약1,300만원) 이내에서 지원

▶ 실태파악 결과 : 서울시내 231동 해당 (피난약자 이용시설 143, 다중이용업소 88)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증감사유)
자치단체 자본 보 조	(×147) 249	(×-) -	(×147) 249	화재 안전성능보강 공사비 지원 사업 신규편성(11개소지원)

- 그러나 고시원의 경우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지원’ 사업과 대상 및 지원 내용이 일부 중복되므로, 본 사업의 지원대상시설로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아울러, 정부에서 시행하는 ‘화재 저감 소방안전대책’과도 취지와 대상이 중복되어 정부차원에서의 유사사업 간 정리가 필요하며, 서울시 차원에서는 서울시의 여건에 맞는 건축물 안전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함.

○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전출금은 주택바우처 지원대상 기준을 기존 ‘주택 거주가구에서 ‘준주택(고시원)’으로 확대함에 따라 추가 수급자 지원에 필요한 기금 부족분 13억 5천만원을 사회복지기금으로 전출하는 사안임.

▶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 먼저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사업은 2019년 공급목표인 1,500호를 위해 1,761억 8천7백만원(시비 1,005억 8천6백만원, 국비 756억원)을 편성하였으나, 150호를 추가 공급하게 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매입비 176억 1천만원(시비 100억 5천만원, 국비 75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임. 이는 ‘서울시 주택공급 방안’ 실행계획이 수립되었고, 역세권 청년주택의 지속적 기준 완화로 공급이 촉진되는 추세로 접어들고 있으나, 건설형 임대주택의 경우 주택이 공급되기까지

10)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물. 다만, 다중이용업 시설은 1층 필로티 구조의 연면적 1천㎡ 이하인 경우 해당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재로서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사업을 확대하여, 우선적인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기하고자 하는 취지로 파악됨.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증감사유)
계	(×83,160) 193,796	(×75,600) 176,186	(×7,560) 17,610	
공 사 공 단 전 출 금	(×83,160) 83,160	(×75,600) 75,600	(×7,560) 7,560	◦ 150호 추가매입 국고보조금 112백만원*150호*45%
출 자 금	110,550	100,500	10,050	◦ 150호 추가매입 출자금 134백만원*150호*50%

-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사업 (세부 내용은 붙임 참조)은 ‘2019년 본예산 편성 시 전년도 대비 96억 7천만원이 증액된 총 113억 5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금번에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준공공임대주택건설자금,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자금,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에 대해 17억 8백만원(15.4%)을 증액 편성함.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증감사유)
이 차 보 전 금	12,785	11,076	1,708	◦ 준공공임대 : 481백만원 ◦ 역세권청년주택 : 801백만원 ◦ 신혼부부임차 : 426백만원

〈2018-2019년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예산 현황〉

(`19. 6 현재 /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19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19추경 예산(안)	증감액	증감율	
합 계	1,657	1,497	90.3%	11,076	9,419	583.6%	12,784	1,708	15%	
사무관리비	177	37	21.0%	160	-17	-9.6%	160	-	0%	
준공공 건설자금지원	이차보전금	900	900	100%	1,300	400	44.4	1,781	481	37%
청년임차보증금 지원	이차보전금	100	100	100%	150	50	-	150	-	0%
역세권 건설자금지원	이차보전금	360	360	100%	958	598	166.10%	1,758	800	84%
신혼부부임차보증금지원	이차보전금	-	-	-	5,514	-	-	5,940	426	8%
한지붕세대공감	공공민자본 위탁사업비	100	100	100%	100	0	-	100	-	0%
공공기관 복합형 서울리츠	시설비	-	-	-	2,848	-	-	2,848	-	0%
청년주거포털사이트	공공운영비	20	-	0%	46	26	130.00%	46	-	0%

- 이 중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이차보전)'은 2019년 예산액으로 13억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18년 하반기 심의통과한 준공공임대주택이 예상보다 많아 (793호, 344억 3천 4백만원) 이에 대한 부족분 4억 8천백만원을 증액 편성함.

〈'19년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예산액	기 지출액	예산잔액①	향후 집행액②	과부족액(②-①)
1,300	688	612	1,093	△481

-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자금'(이차보전금) 지원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자에게 공급호수에 따라 최대 240억원을 용자알선하고 이자 중 일부를 이차보전금(최대1.5%)으로 지원¹¹⁾해 주는 사업으로, 대출실행절차 간소화, 협약금융기관 확대 등으로 추가 소요되는 예산 8억원을 증액 편성함.

참고로, '17회계연도 결산 결과 편성예산 10억 중 99%를 불용처리하였고,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시(제283회 임시회) 기정 예산 27억 6천 만원에서 24억원(86.9%)을 감추경한 바 있음.

〈'19년 역세권청년주택 건설자금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예산액	기 지출액	예산잔액①	향후 집행액②	과부족액(②-①)
958	624	334	1,134	△800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이차보전)' 사업은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19년 47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1분기 중 지원실적이 증가함¹²⁾에 따라 4억 2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함.

〈'19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예산액	기 지출액	예산잔액①	향후 집행액②	과부족액(②-①)
5,514	1,575	3,939	4,365	△426

참고로, 이 사업은 은행의 청구에 의해 반기별로 익월 말일까지 이차보전금을 지급¹³⁾하는 사업으로 2019회계연도 본예산 편성시 신청수요가 매우 높을

11) 최대 12년(건설기간(4년이하)+임대의무기간(8년))간 저리로 대출

12) '18년 계획 5,000건, 실적 5,498건, '19.1~3월 계획 1,250건, 실적 2,329건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해 진 것으로 파악됨.

〈'18.5~'19.5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월별 대출실행 실적〉

계	'18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725억원	78억원	557억원	869억원	1,089억원	759억원	1,134억원
7,680건	57건	385건	577건	732건	497건	761건

11월	12월	'19년 1월	2월	3월	4월	5월
1,070억원	1,039억원	850억원	1,109억원	1,147억원	1,066억원	958억원
709건	679건	542건	720건	735건	676건	610건

- 다음으로 추가 8만호에 대한 '공공주택 건설지원'을 위하여 16억 7백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이는 '서울시 주택공급 방안'에서 26개 부지를 활용하여 공공주택 17,280호를 공급하고자 발표('18.12.26)한 내용에 따라, 10개 부지에 대해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부지에 대하여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며, 예산안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공공주택 추가 8만호 건설을 위한 추경예산(안) 세부내역〉

과목	사업명	추경예산안 (천원)	과업내용 및 산출근거 (예산담당관 조정)
합 계		1,607,394	
공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소 계	848,834	
	북부간선도로	339,834	◦ 조감도, 항공촬영, 지형실사모형 제작, 설계공모관리, 지구지정 등
	연희 지구	287,000	◦ 기본 및 실시설계('19.1 투심 완료) 915,207천원×(5/16개월)
	증산 지구	222,000	◦ 기본 및 실시설계('19.1 투심 완료) 707,897천원×(5/16개월)
공사공단 자본대출금	소 계	758,560	
	서남/중랑물재생센터	400,000	◦ 기본구상/재해영향성/타당성조사 등 1,292,476천원×(7.5/24개월)
	강일/장지차고지	285,300	◦ 기본구상/재해영향성/타당성조사 등 912,720천원×(7.5/24개월)
	금천경찰서/신봉터널	27,260	◦ 타당성심사 금액(금천경찰서 : 공기업평가원) ※ 신봉터널 : 서울시 시행
	염곡차고지	46,000	◦ 전략환경영향평가 258,100천원×(4.3/24개월)

13) '18.7월~12월 이차보전금 : '19.1월 지원, '19.1~6월 이차보전금 : '19.7월 지원

- ‘석관제2구역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사업¹⁴⁾은 석관제2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이 준공(‘19.3)됨에 따라 성북구청에서 신청(18.4)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해 해당구청에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32억 3천 만원을 증액 편성함.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증감사유)
자치단체 자본 보 조	3,230	-	3,230	◦ 정비사업 준공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는 착공전 사업시행인가(변경)시 보조 신청서를 제출한 구역에 한하여 지원되는데, 석관2구역은 착공(‘16.11) 전 보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그 대상이 아니었으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제6775호, 2018.01.04.)으로 한시적 경과 조치¹⁵⁾가 마련됨에 따라 보조 대상에 포함되었음. 그러나 보조 대상 여부 및 보조 금액 검토를 위해 일정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2019년 본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음.
- ‘재정비촉진사업 용자금 지원’ 사업¹⁶⁾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해당 조례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함에 따라, 추진 위원회나 조합에서 초기 자금조달이 어려워 공공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임. 그러나 그 간 재원의 한계로 필요경비를 시에서 모두 지원해주지 못하고 있어 현장의 불만이 증가해 왔으며, 2019년 제1차 용자금 지원(‘19.6.3 심사) 시

14) 정비기반시설이 노후된 주택재개발 지역에 새로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에 대하여 법에 규정된 보조금을 지원하여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9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해당 조례 제5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

15) 착공신고를 마친 정비구역 중 위 조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한 구역에 대하여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16) 조합과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를 용자 지원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의 조기 정착을 도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9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해당 조례 제59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31조)

신청구역 및 금액이 대폭 증가하여 추경예산이 필요하게 되었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증감사유)
민 간 용 자 금	8,000	3,000	5,000	◦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 운영자금 등 민간수요가 방대하여 용자금 증액

〈용자금 지원 연도별 예산·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예산	35,324	38,500	40,800	16,043	16,000	17,500
결산	28,244	38,497	38,421	15,275	16,000	-

〈용자금 지원 신청·결정액 현황 및 추경예산(안)〉

(단위 : 백만원)

	2019년 예산	제1차 신청 ('19.6.3)	결정액	추경예산(안)	증감
계	17,500	79,995	16,800	22,500	5,000
도정	14,500	59,971	9,500	14,500	-
재촉	3,000	20,024	7,300	8,000	5,000

담 당 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입법조사관 윤 은 정
연 락 처	02-2180-8208
이 메 일	urbanth@seoul.go.kr

【붙임】 '19년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사업

□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사업 예산집행 현황('19년)

(단위: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합계		11,076,469	3,253,569	7,822,900	29%
사무관리비		160,000	34,900	125,100	22%
공공운영비	청년주거포털	46,469	0	46,469	0%
이차보전금	준공공 건설자금	1,300,000	859,972	440,028	66%
	역세권 건설자금	958,000	655,426	302,574	68%
	청년임차보증금	150,000	28,576	121,424	19%
	신혼부부임차보증금	5,514,000	1,574,693	3,939,307	29%
시설비	공공시설 복합형 서울리츠	2,848,000	0	2,848,000	0%
민간위탁사업비	한지봉세대공감	100,000	100,000	0	100%

□ 사업현황 등 설명자료

○ 준공공 건설자금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서울시내 준공공임대사업자로서 임대주택을 신축하려는 자에게 건설자금 이자를 이차보전

○ 역세권2030청년주택 건설자금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건설사업자에게 공급호수에 따라 최대 240억원을 융자알선하고 이자중 일부를 이차보전

○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만19~39세 사이의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대학(원)생에게 임차보증금 대출금의 이자를 이차보전

○ 한지봉 세대공감

- 지원대상 : 어르신 소유 주택의 빈방을 주택인근 대학생에게 임대하는 자
- 지원내용 : 공급호수 당 백만원 이하 환경개선공사 지원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 일정소득수준 이하 신혼부부의 임차보증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

〈신혼부부임차보증금 지원사업 개요〉

- 지원대상 : 다음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예정인 자
 -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 혹은 대출실행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자인 세대주
- 대상주택 :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5억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 90% 이내)
- 지원금리 : 최대 연 1.2%p 이내
 - 부부합산 연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 연 1.0%p
 - 부부합산 연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 연 0.7%p
 - 단, 자녀가 있거나 예비신혼부부인 경우 연 0.2%p 추가 지원
- 지원기간 : 2년 이내 일시상환방식(당초대출금 10% 상환시 최장 4년까지 가능)
 - 단, 출산, 입양 등으로 가족구성원 변경시 상환없이 추가 4년 연장 가능